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다수의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
- I. 머리말
 - II. 연대의무와 항변권 및 상계권
 - III. 채무의 종료와 판결의 효과
 - IV. 연대채무자 간의 배분과 분담청구
 - V. 다수의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
 - VI. 요약 및 결론
-

주제어 : 다수의 채무자, 다수의 채권자, 연대 및 개별채무자, 연대 및 개별채권자, 배분

I. 머리말

법률상 ‘채무’는 ‘특정인(의무자)이 다른 특정인(권리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로, ‘채권’은 ‘특정인(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된다. 여기서 이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obligor)라 하고,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obligee)라고 한다.

채무에는 주된 의무로서 ‘급부의무’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부수적 의무’로 구분하고 있음이 통설인데, 여기서 채무자 급부의무의 내용은 계약 또는 법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E-Mail : cyrus@daegu.ac.kr

2 무역상무연구 제72권 (2016. 12)

률에 의해 특정된다. 곧 계약에 의해 채권채무가 발생한 때는 계약에 의해, 그 내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때는 보충적으로 관습 등에 의해 결정된다. 채무에 기한 급부의무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법적 실익은 전자는 쌍무계약에 기하여 상호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아, 불이행이 행사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고, 후자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용인되나,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에 있다.¹⁾ 여기서 어떠한 것이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통상 계약에 비추어 당해 급부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른 한편 채권은 특정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로서 절대권인 물권과는 달리 상대권의 특질을 지니는데, 여기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전개되는 법률관계를 일괄하여 ‘채권관계’라고 칭하며,²⁾ 여기서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련의 급부청구권으로 취급되고, 그 법적 성질은 재산권, 상대권 그리고 청구권 등의 속성을 지닌다.³⁾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국제상사계약’(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에서 채권관계의 내용과 그 이행에 관해서는 ‘국제성’(internationality)에 기한 국제통일법규범의 시각에서 통상 계약당사자의 상호 의무의 내용에 따라 그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적절히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논점은 채권관계에 다수의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 보아, 이는 법적용상 특단의 기준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논점을 배경에 두고 채권관계에 임한 다수의 계약당사자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에 의해 제정·공표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2010)]의 신설규정으로서 ‘다수의 채무자와 채권자’(plurality of obligors and obligees)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PICC는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내용의 특징을 통해(제1.1조), 다수의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정하여 일반원칙으로서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들 규정의 법적 기준과 함의에 주안점을 두고 그 결과로서 실무계 및 유관분야를 향하여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 시사점 내지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안춘수, “계약적 채권관계상의 의무”, 고시계 제45권 제10호, 한국고시학회, 2000. 10, pp. 173~174 ; 임형택, “약정채권관계에서의 급부의무와 보호의무”, 재산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10, p. 123 ; 김상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고찰”, 법조 제52권 제4호, 법조협회, 2003. 04, p. 6.

2) M. J. Bonell, “UNIDROIT Principles and Transnational Law”, *Unif. L. Rev.* NS 5, 2000, p. 202 ; 김상중, “채권관계의 상대성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재산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3. 08, p. 15.

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pp. 959~960 ; 지원립, 민법강의, 홍문사, 2004, pp. 686~687 ; 양창수, 민법 I : 계약법, 박영사, 2015, p. 382.

II. 연대의무와 항변권 및 상계권

1. 연대 및 개별의무의 추정과 채권자의 권리

1) 다수의 채무자의 유형

다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채무자가 전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대하여, 달리 각각의 채무자가 자기 지분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의무를 부담한다(제11.1.1조).⁴⁾ 요컨대 본조는 채무가 다수의 채무자를 구속하거나, 그 권리를 다수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⁵⁾ 일례로 A, B, C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X로부터 공동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 경우 A, B, C는 본 차입금을 상환함에 있어 공동채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⁶⁾

그렇지만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개입되어는 있으나, 채무자 각각이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공동채무자로는 취급되지 않는데,⁷⁾ 이를테면 특정한 물품을 완성함에 있어 다수의 당사자가 분야별로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들 각자의 의무는 서로 상이하다고 보아, 이 경우 채무자 각각은 공동채무자로 취급되지 않게 된다. 다수의 채무자가 일인의 채권자에게 동일한 의무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채무자가 전체 의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각각의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책임지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연대 및 개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제11.1.3조)에 따라, 채권자 누구에게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분담청구의 정도’(제11.1.10조)에 따라, 추후 채무자 간에 기여한 정도의 비율에 따라 청구대상이 특정된다. 달리 후자는 채권자가 각각의 채무자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청구할 자격을 보유하는데, 여기서 공동채무자가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또는 별도로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연대 및 개별의무의 추정’(제11.1.2조)에 따라 결정된다.

4) www.unidroit.org/instruments/commercial-contracts/unidroit-principles-2010(2010.11.25).

기술편의상 PICC(2010)의 원문은 본 웹페이지에 의한다.

5) M. Fontaine, “New Provisions on Plurality of Obligors and of Obligees in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Uniform Law Review* 16, 2011, p. 551 ; V. Heutger,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Towards a Globa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20(3), 2012, pp. 889-897.

6) 이시환, “UNIDROIT Principles 2010에 관한 소고”,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08, p. 116.

7)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p. 367~368.

2) 연대 및 개별의무의 추정

다수의 채무자가 일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상황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하여 개별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11.1.2조). 곧 통상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의 채무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채권자의 구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공동 및 개별의무의 추정은 상황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박될 수 있고,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명시적인 계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⁸⁾ 그 밖의 경우는 다수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⁹⁾ 예컨대 A, B, C가 X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만약 계약내용에 당사자 중 각자의 의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그들은 공동 또는 개별적인 채무자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당사자 모두가 X에 대하여 전체 대출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¹⁰⁾ 그 밖의 경우로서 주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특정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부담을 지우는, 곧 부수계약으로서 보증인의 경우를 예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보증인은 계약당사자로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와 보증인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순서대로 구속을 받게 되는데, 일례로 B가 보증인이 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주채무자로서 A가 X로부터 특정금액을 차용하였다면, B는 A가 불이행하는 경우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¹¹⁾ 공동 및 개별의무제도는 보증인의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보증인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최초 채무자의 의무를 보증하려는 당사자에게 원채무자 다음으로 공동 및 개별채무자로서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개입한 당사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제11.1.3조). 곧 채권자의 권리에 기한 법률효과는 완전한 이행을 수령할 때까지 각각의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¹²⁾ 예컨대 A, B, C가 X에게서 동일한 비율대로 자금

8) J. A. E. Faria, "The Influen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n National Laws", *Uniform Law Review* 21(2~3), 2016. 08, p. 560.

9) S. Vogenau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t Twenty: Experiences to Date, the 2010 Edition, and Future Prospects", *Uniform Law Review* 19(4), 2014. 10, pp. 481~518.

10) UNIDROIT, *op. cit.*, p. 370.

11) *Ibid.*, p. 371.

을 부담하여 특정물품을 매수하였다고 할 때, X는 그 누구에게나 전체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X의 청구는 일인 이상의 채무자로부터 완전한 이행을 받을 때 종료되며, 달리 A가 자신의 동일한 비율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X는 미지급된 잔여금에 관하여 여전히 청구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이를 B 또는 C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¹³⁾

2. 항변권과 상계권

1) 이용가능성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개별 및 연대채무자는 자신에게 사적이거나 모든 공동채무자에게 공통적인 모든 항변과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공동채무자중 일인 이상에게 사적인 항변 또는 상계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11.1.4조). 본조는 개별연대채무자가 항변과 상계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항변과 상계권이 다수의 채무자 중 특정한 채무자에 개인적으로 기인하는 것이거나 또는 모두에게 공통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 그 밖의 연대채무자의 일인 또는 다수인에게 개인적으로 기인한 항변 및 상계권을 구별하고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¹⁴⁾ 예컨대 X국에 소재한 A, B가 연대하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Y국에 소재한 C로부터 특정물품을 구매한 상황에서, X국이 Y국과의 모든 상거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경우 이러한 사실은 A, B 각각이 C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공동항변에 해당된다. 또한 C가 개별연대채무자인 A, B에게, 특정금원을 대출해 준 상황에서, 이후 C가 일정금원에 대하여 A의 채무자가 되었다면, A는 C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B는 A에게 개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¹⁵⁾

2) 이행 또는 상계의 효과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나 상계 또는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대항한 채권자의 상계는 그 이행 또는 상계의 정도만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밖의 채무자의 의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급된다(제11.1.5조). 이 경우 공동채무자중 일인이 의

12) L. A. Sarah and E. F. Agro, "The New Provisions on Plurality of Obligors and of Obligees in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Uniform Law Review* 20, 2011, p. 506.

13) UNIDROIT, *op. cit.*, p. 372.

14) E. Clive, *eds.*,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Edinburgh Law Review* 20(2), 2016, pp. 249-251.

15) UNIDROIT, *op. cit.*, p. 373.

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밖의 공동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항변할 수 있다.¹⁶⁾ 공동채무자중 일인 채무자에 의한 이행과 관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상계는 용인되며, 상계권이 채권자에 의해 개별연대채무자 중 일방에게 행사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A, B, C가 연대하여 X에게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때, 만약 A가 이를 전액 상환하였다면, B와 C는 X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A의 이행을 원용할 수 있다. 달리 동일한 상황에서 본건 외의 개별거래에 따라, A가 X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상계권을 X에게 행사하였다면, 상계권은 A에 의한 개별연대의무에 의하여 일부이행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고, 이에 따라 B, C는 해당금원만큼 채무가 종료된다.¹⁷⁾

Ⅲ. 채무의 종료와 판결의 효과

1. 채무의 종료 또는 청산의 효과

개별 및 연대채무자의 채무종료 또는 개별 및 연대채무자와의 청산은,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가 종료되거나 청산된 채무자의 지분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를 종료시키고, 나머지 채무자가 채무를 종료한 채무자의 지분만큼 채무가 종료되는 경우 그들은 채무가 종료된 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한다(제11.1.6조). 만약 채권자가 자격이 없는 개별연대채무자중 특정인의 채무를 더 이상의 조건 없이 종료하게 되면, 이 경우 종료된 채무자의 지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밖의 채무자는 종료된 채무자의 지분만큼 채무가 종료되고, 그 나머지는 존속한다.¹⁸⁾ 일례로 A, B, C가 X로부터 동일한 금원을 차용하였고 채무자들은 개별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X가 특단의 조건 없이 A의 채무를 종료하였다면, B와 A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은 A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종료되나, X에 대한 B, C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¹⁹⁾

채권자는 경우에 따라 공동채무자중 특정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지분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와 별도 청산의 일부로 보아, 당해 상환금은

16) Fontaine, *op. cit.*, p. 553.

17) UNIDROIT, *op. cit.*, p. 374.

18) T. Uchida, "Contract Law Reform in Japa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Uniform Law Review* 16, 2011, p. 714.

19) UNIDROIT, *op. cit.*, p. 375.

정산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지분의 전부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그 밖의 채무자 개별연대채무는 지급한 금액만큼 경감되고, 최초 지급금액을 청산하는 채무자 지분에 따라 경감되지 않는다. 예컨대 A, B, C가 개별연대하고 X에게 특정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A와 X 간의 분쟁에 관한 합의를 통해 A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보다 적은 금원을 지급하고 X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 경우 X는 당초 채무의 부담금원을 B 또는 C에게 청구할 수 없다. 곧 B, C의 개별연대채무는 최초 전액납입금액에 비추어 경감되나, 그들 각자의 개별연대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²⁰⁾

2. 제척기간의 종료 또는 중지의 효과

1) 제척기간의 종료

일인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권리의 제척기간 종료는 나머지 개별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또는 개별연대채무자 간의 상환청구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가 일인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제척기간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때, 제척기간의 진행은 나머지 개별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중지된다(제11.1.7조). 채권자의 개별연대채무자중 일인 또는 다수에 대한 권리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금지되는데, 이는 채권자가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가 제척기간 종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하여 자신의 권리행사에 특단의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A, B가 개별연대하여 X의 용역제공에 대한 특정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A는 X의 용역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달리 B는 이를 인정하였다고 할 때, 본건에 기한 소송과정에서 X가 A, B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A에 대한 X의 청구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제척기간 도래 전에 채권자 권리를 인정한 B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계기가 되며, 이에 X는 아직도 B에게 당해 채무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²¹⁾

2) 제척기간의 중지

채권자가 개별연대채무자중 특정인에 대하여 소송 또는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의한 기간의 진행정지나 소송 외 분쟁해결을

20) *Ibid.*, p. 377.

21) *Ibid.*, p. 378.

통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지된다. 일례로 A, B가 개별연대하여 X에게 특정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A, B가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제척기간 3년이 종료된 상황에서, X가 A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당해 제척기간은 A 뿐만 아니라 B에 대해서도 중지된다.²²⁾

3. 판결의 효과

일인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명한 판결은 나머지 개별 및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개별 및 연대 채무자들 간의 상환청구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채무자에 대해 사적인 근거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제11.1.8조). 환언하면, 채권자가 사법적 또는 중재절차를 개별연대채무자중 일인 또는 다수에 대하여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판결은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²³⁾ 따라서 판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나머지 채무자들은 원계약내용에 있는 채무를 다름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일례로 개별연대한 A, B가 C로부터 특정금원을 차용하고 A의 상황에 대해 X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원이 A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다면, 판결은 그 자체로 B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곧 B는 X에게 당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판결에 따라 A가 X에게 차용금원을 지급한 경우 X에 대한 B의 채무는 이행 또는 상계의 효과에 따라 종료되고, B는 ‘분담청구의 정도’(제11.1.10조)에 의거, A의 분담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또한 A, B가 개별연대하여 X에게 급부하기로 한 상황에서, 급부의 하자로 X가 A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이 A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다면, B는 하자있는 이행의 결과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의무는 손해배상금액 만큼 증가되지 않는다. 달리 A가 법원에서 명한 손해배상금을 X에게 지급하였다면, A는 B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²⁴⁾ 요컨대 개별연대한 일인 채무자에 대한 법원판결은 분담청구의 정도에 따라 개별연대채무자 간의 상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개별연대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앞선 개별 및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개별 및 연대채무자들 간의 상환

22) *Ibid.*

23) K. P. Berger, “The Ro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ntract Practice: The UNIDROIT Model Clauses”, *Uniform Law Review-Revue de droit uniforme* 28, 2014, p. 15.

24) UNIDROIT, *op. cit.*, pp. 379~380.

청구권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당해 판결이 해당 채무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각된다.²⁵⁾ 다른 한편 만약 개별연대채무자가 자신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또한 이에 부수한 특단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례로 A, B가 X로부터 명화를 구입하고 개별연대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이에 X가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명화의 품질에 관한 A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를 위작으로 판명하고, 그 결과 명화의 가격이 실제가격으로 인하되었다면, B는 X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동일하게 차감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원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달리 A가 자신의 불이행이 명화의 위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당해 주장이 법원이 주문한 전문가 의견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이 경우 본건 계약은 해제됨과 동시에 B는 X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종료하기 위해 본건 법원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²⁶⁾

IV. 연대채무자 간의 배분과 분담청구

1. 개별 및 연대채무자 간의 배분

개별 및 연대채무자들은 상황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지분으로 그들 간에 채무를 진다(제11.1.9조).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 이 경우 부각되는 논점은 각각의 지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본조에 따라 이러한 지분은 동일하게 취급된다.²⁷⁾ 일례로 A, B가 X로부터 Y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 최종분담에 있어서 A, B의 지분은 각각 500만원이다. 그러나 각각의 그 지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연대채무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A, B가 그들 각각의 주식지분참여율을 80%와 20%로 합의하였다면, 당해 비율은 최종배당을 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비율로 추정된다.²⁸⁾ 다른 한편 일부 채무자가 채무의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25) Berger, *op. cit.*

26) UNIDROIT, *op. cit.*, pp. 380~381.

27) Vogenauer, *op. cit.*

28) UNIDROIT, *op. cit.*, p. 382.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방이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타방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으로서, 곧 개별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에 합의한 경우가 될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사안에서 A가 X에게 1,000만원을 대출을 신청할 당시 B가 개별연대채무자로 개입하는 조건이 존재하였다면, 이 경우 B가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아, 최종 주식배당에 있어 A, B 각각의 지분은 100%와 0%로 본다.²⁹⁾

2. 분담청구의 정도

개별 및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이행한 경우 각 채무자가 불이행한 지분의 정도만큼 나머지 채무자들 누구든지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10조). 곧 개별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지급한 후, 그 채무자는 각각의 지분을 기초로 초과분을 반환받기 위해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³⁰⁾ 일례로 A, B는 X로부터 Y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면, 이 경우 A, B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만약 A가 전액을 X에게 상환하였다면, A는 자신의 지분인 50%를 초과한 금액 즉 5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B로부터 분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달리 A와 B가 각자의 주식취득에 대한 참여비율을 80%와 20%로 합의한 상황에서, A가 일방적으로 상환액 80%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A는 초과분, 즉 B의 200만원 주식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른 한편 A가 X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할 때, 본건 대출이 B가 개별연대채무자로서 개입한다는 조건으로 허용되었다면, 이 경우 B만이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A의 지분이 100%인 상황에서 B가 X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B는 A로부터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³¹⁾

3. 채권자의 권리

1) 채권자 대위

개별 및 연대채무자 간 배분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개별 및 연대채무자는 나머지 그 밖의 채무자들로부터 초과분을 각 채무자가 불이행한 지분의 정도만큼을 회

29) *Ibid.*

30) R. Michaels, "The UNIDROIT Principles as Global Background Law", *Uniform Law Review-Revue de droit uniforme*, 19(4), 2014, pp. 650-653.

31) *Ibid.*, p. 383.

수하기 위해 그들의 이행을 확보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완전이행을 받지 않은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에 대해 불이행된 부분만큼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며, 분담청구를 행사하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제11.1.11조). 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개별연대채무자는, 분담청구의 정도에 따라,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분담청구권을 보유한다.³²⁾ 여기서 채권자 대위와 관련하여 분담청구권을 보유한 연대채무자에게 자신의 이행을 확보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권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채권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경우 개별연대채무자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분담청구의 정도에 따른 분담청구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³³⁾ 예컨대 X가 개별연대채무자로서 A의 부동산을 담보로 A, B에게 1,000만원을 대출하고 B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면, ‘분담청구의 정도’(제11.1.10조)에 따라, B는 500만원을 분담금으로 A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또한 B는 A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 행사 등 500만원까지 A에 대하여 X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³⁴⁾

2) 채권자의 권리보유 및 우선순위

완전한 이행을 받지 않은 채권자는 개별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고 또한 이행의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보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준은 개별연대채무자에게 제공된 혜택이 채권자의 나머지 권리에 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³⁵⁾ 이러한 우선순위는 채권자가 완전이행을 받을 때까지, 의무를 이행하는 개별연대채무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연기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앞선 일례에 결부하여 B가 대출금 800만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B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금액, 즉 300만원에 대하여 A에게 분담청구권을 보유한다. 또한 B는 A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이행 등의 금액까지 A에 대하여 X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잔액 200만원에 대한 X의 권리는 B의 권리에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B의 A에 대한 권리의 집행은 X가 잔금 2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일어날 수 없다.

32) S. Cercel and S. Scurtu,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olutions of the Romanian Civil Code and the UNIDROIT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Revista de Stiinte Politice* 50, 2016, p. 99.

3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상세는 노종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민사법학 제58권, 한국민사법학회, 2012, pp. 239~277.

34) UNIDROIT, *op. cit.*, pp. 384~385.

35) Vogenauer, *op. cit.*

4. 분담청구에 대한 항변

1) 공동의 항변 및 상계권

의무를 이행한 연대채무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개별 및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이용 가능한 여하한의 공동항변 및 상계권을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사적인 항변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연대채무자의 일인 이상에게 사적인 항변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1.1.12조).

항변권과 상계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채권자에 의하여 이행을 요구받은 공동채무자는 모든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항변 및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만약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종료하였거나 경감하였을 항변 또는 상계권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공동채무자가 분담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그 밖의 개별연대채무자는 그러한 항변 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³⁶⁾ 일례로 개별 연대채무자인 A, B는 X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한 상황에서, X는 당해 라이선스가 복수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고 확약하였지만, 이것이 라이선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 채무자는 X에 대한 공동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만약 X가 A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경우 A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B는 A에 대한 자신의 분담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³⁷⁾

2) 개인적인 항변

공동채무자는 분담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 항변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일례로 개별연대채무자 A, B, C가 X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A가 사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B가 X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 A는 B의 분담청구에 대해 개인적 항변대상으로서 사기를 주장할 수 있다.³⁸⁾

상계권은 PICC에서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제8편), 항변과 동일한 규칙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는 채권자가 분담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계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계권은 항변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³⁹⁾ ‘이행 또는 상계의 효과’(제11.1.5조)에 따라 상대방 공동채무자에 의한 이행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로부터 원채무자의 채무를 종료함으로써

36) M. J.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Caselaw and Bibliograph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6, pp. 431-446; Fontaine, *op. cit.*, p. 558.

37) UNIDROIT, *op. cit.*, p. 386.

38) *Ibid.*

39) Bonell, *op. cit.*

써 상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원채무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상대방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에,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명백한 청구를 행사할 위치에 있다.⁴⁰⁾

한편 공동채무자는 나머지 공동채무자 일인 이상에게 개인적인 항변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례로 개별연대채무자 A, B는 X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X는 500만원에 대한 A의 채무자가 되어 A에게 동 금액에 대한 상계권을 허용하였고, 이에 X는 B로부터 1,000만원의 상환을 청구하고, B는 전액을 지급한 상황에서, 만약 B가 A로부터 분담금을 청구하는 경우 A는 B에 대하여 자신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당해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B에 의한 X에 대한 지급은 X에 대하여 A의 채무를 종료하였기 때문이다. A는 B에 대한 분담주식을 지급하여야 하고, X에 대하여 500만원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 B가 C로부터 분담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C는 이러한 권리가 제3의 채무자에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A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⁴¹⁾

5. 변상불능

자신의 지분보다 많은 것을 이행한 개별 및 연대채무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별 및 연대채무자로부터 분담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면, 의무를 이행한자를 포함한 나머지 채무자들의 지분은 그 비율에 따라 증가된다(제11.1.13 조).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 분담청구를 행사하는 공동채무자는, 상대방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또는 실종되었거나 자산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분담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손실부담은 나머지 공동채무자 간에 배분된다.⁴²⁾ 일례로 A, B, C는 X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고 분담율은 동일하게 합의한 상황에서, A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후, B, C에게 3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B가 지급불능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손실금 300만원은 이행한 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모든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배분된다. 곧 그들의 분담은 동일하기에, A, C는 각각 1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A는 C로부터 300만원을 상환받을 수 있다.⁴³⁾

변상불능과 관련, 본조를 원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나머지 공동채무자들로부터 증가된 분담금을 청구하기 위해, ‘특정한 결과를 이행하

40) Fontaine, *op. cit.*

41) UNIDROIT, *op. cit.*, p. 387.

42) Vogenauer, *op. cit.*, pp. 510~512.

43) UNIDROIT, *op. cit.*, p. 388.

여야 할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제5.1.4조)의 (2)에 따라, 지급불능한 공동채무자로부터 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예컨대 앞선 일례에서 A가 재정곤란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B의 주장에 의문을 갖지 않고, 즉시 C로부터 증가된 분담금을 요청한 상황에서, 변상불능에 관한 본조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A는 B로부터 분담금을 청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촉’·‘가처분’·‘압류’·‘법적 절차’ 등이 포함된다.⁴⁴⁾

‘특정한 결과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duty to achieve a specific result, duty of best efforts)에 관하여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정도는 계약내용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계약당사자는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행하였어야 할 정도의 수준에서 각자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특정결과의 달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⁴⁵⁾ ‘특정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 간의 구별은 그것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양자 공히 계약상의 의무에 비추어 빈번하고 전형적인 심각성의 정도와 일치한다.⁴⁶⁾ 이 경우 양당사자의 의무는 동일한 계약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하자 있는 기계를 수리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보수작업의 품질에 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특정한 예비부품의 대체재에 관하여 특정결과를 성취하여야 할 의무와 병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의 경우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비추어 약속한 결과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가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목적달성불능으로 보아 ‘불가항력’(제7.1.7조)의 조문이 적용된다.⁴⁷⁾ 반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결정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기울였을 노력과 비교하여 덜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44) *Ibid.*

45) P. Bernardini, “Unidroit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Uniform Law Review* 19(4), 2014. 10, pp. 561~569.

46) A. Reinisch, “The Relevan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Uniform Law Review* 19(4), 2014, p. 612 ; M. J. Bonell, “International Investment Contracts and General Contract Law: A Place fo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17(1-2), 2012. 01, p. 141.

47) I. Schwenzer,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Victoria U. Wellington L. Rev.* 39, 2008, p. 709 ; Perillo, *op. cit.*, pp. 300~302 ; Bonell, *op. cit.*, pp. 154~156.

V. 다수의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

1. 다수의 채권자의 동일한 의무

다수의 채무자는 일인 채무자로부터 동일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때, 각각의 채권자는 자신의 지분만 청구할 때 그 청구는 각각 개별적이고, 각각의 채권자가 전체 이행을 청구할 때, 그 청구는 연대 및 개별적이며, 모든 채권자가 공동으로 이행을 청구할 때 그 청구는 공동이다(제11.2.1조). 다수의 채권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예컨대 공동 보험업자, 주식취득을 위한계약에서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 건설 또는 석유산업 같은 분야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파트너계약 등을 예시할 수 있다.⁴⁸⁾ 다만 동일 채무자의 다수 채권자가 그 밖의 의무로부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A, B는 상호 새로운 건축공사에 개입하고 있는데, 그들 각자의 고객에 대한 청구는 그 밖의 의무, 곧 그들 각각의 용역에 대한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청구는 PICC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되는 유관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⁴⁹⁾ 반면에 건설 프로젝트의 다수 당사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그들 각각의 용역에 대해 하나의 지급을 요청할 때, 그들은 그 지급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로 취급된다. 여기서 청구는 모든 채권자가 함께 청구하고,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그들 모두를 수익자로 하여 행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공동이 된다.

다수 채무자의 경우 연대 및 개별 의무의 추정원칙은 통상의 상관행에 일치하고 있다고 보아 개별연대의무를 추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다수 채권자의 청구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당해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유형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우세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초한다.⁵⁰⁾ 이 경우 선택은 상당히 다양하며, 주로 해당 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채권자가 개입되는 경우 당사자는 명시조항에 의하여 관련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일례로 A, B는 X의 공동소유주이며, 이것을 2,000만원에 C에게 매도할

48) H. D. Gabriel, "Use of UNIDROIT Principles as Neutral Law in Arbitration", *J. Arb. Stud.*, 23, 2013, p. 39.

49) UNIDROIT, *op. cit.*, p. 390.

50) A. S. Rosenberg, eds.,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Franchising, and Distribution", *The International Lawyer* 44(1), 2012, pp. 199~213.

당시 계약서에 각각의 매도인은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 청구는 공동이며 개별적이다. 달리 계약서에 A, B의 권리가 별 개입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들 중 각각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종전의 소유권 지분과 일치한다.

요컨대 개별연대청구는 특단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곧 개별연대 청구는 서로 다른 채권자 간의 이행을 구분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상황을 단순하게 하는데, 다수 채권자의 관점에서 청구는 통상 그것이 개별 연합인 경우 훨씬 용이하다. 한편 다수의 채권자는 그들의 청구가 개별연대이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개별연대채권자는 완전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X국 A와, Y국 B는 제조자로부터 다량의 차량주문에 참가한 상황에서, X국 차량은 핸들이 오른쪽, Y국 차량은 핸들이 왼쪽에 장착되어 있었다면, 본건 물품인도청구 시 이러한 상황은 A, B는 별도의 채권자이고, 따라서 각각 자신의 차량 종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⁵¹⁾

2. 연대청구의 효과

다수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 중 일인을 수익자로 의무의 완전한 이행은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 의무를 종료한다(제11.2.2조). 청구가 개별연대에 의한 경우 각각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완전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⁵²⁾ 예컨대 공동소유주로서 지분이 동일한 A, B가 X를 1,000만원에 C에게 매도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는 개별연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면, A는 ‘개별 및 연대채권자 간의 배분’(제11.2.4조)에 의거, C로부터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⁵³⁾

채권자 중 어느 특정인을 수익자로 하여 완전이행을 한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의무도 종료된다. 그 밖의 실제적 측면에서 채권자는 완전이행의 담보를 목적으로 개별연대채무자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에 관하여 의무의 중복 및 필요외적 비용의 회피를 목적으로 특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⁵⁴⁾ 곧 채권자는 채무자 중 그 누구에게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거나 또는 연대채권자 상호 간 이를 협의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 누구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또 다른 채권자가 벌써 이행을 요

51) UNIDROIT, *op. cit.*, p. 392.

52) Faria, *op. cit.*, p. 570.

53) UNIDROIT, *op. cit.*, p. 394.

54) Clive, *op. cit.*,

구한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는 이행의 사실을 그 밖의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연대채권자에 대한 항변

1) 항변의 이용

채무자는 여하한의 개별연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자와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항변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을 모든 공동 채권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채권자중 일인 이상의 자와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항변과 상계권은 주장할 수 없다(제11.2.3조). 채무자의 항변은 반드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데, 곧 일부 항변은 채무자가 일인 채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⁵⁵⁾ 이러한 항변은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일례로 X가 A, B, C에게 특정물품의 공급을 합의하고, 계약내용에 A, B, C가 물품인도에 대한 개별연대채권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X는 A가 제시한 장소만이 물품의 인도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면, X는 인도를 요구한 A에 대한 항변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원용할 수 있으나, 인도장소가 적절한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고 있는 B, C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⁵⁶⁾

2) 이행과 상계

‘이행 또는 상계의 효과’(제11.1.5조)에서는 개별연대채무자 일인에 의한 이행이나 상계 혹은 개별채무자 일인에 대한 채권자에 의한 상계는 이행이나 상계의 정도만큼, 채권자와 관련하여 나머지 채무자의 의무를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연대채권자 일인에 의하여 행사된 상계 또는 수령한 이행은 그 상계 또는 이행의 정도만큼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의무를 종료한다. 예컨대 A, B, C는 개별연대하여 X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후, A가 X로부터 전액을 수령한 상황에서, B 또는 C가 상환을 청구한다면, X는 A에게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X가 또 다른 채권관계로서 A에게 500만원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X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출약정에 의한 X의 의무는 A에게 뿐만 아니라 B, C에 대해서도 종료된다.⁵⁷⁾

55) Fontaine, *op. cit.*, p. 562.

56) UNIDROIT, *op. cit.*, p. 396.

3) 종료 및 청산

‘채무종료 또는 청산의 효과’(제11.1.6조)에 따라, 개별연대 채무자 일인의 의무 종료 또는 개별연대채무자 일인과의 청산은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 종료되거나 청산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모든 다른 채무자들의 의무를 종료한다. 이와 동일한 시각에서 채권자 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허용된 의무의 종료 또는 채권자 일인에 의한 채무자와의 청산은 그 종료 또는 청산의 정도까지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종료한다. 일례로 X의 공동소유자인 A, B가 X를 C에게 매도하고, 대금지급에 관하여 계약서에 A, B가 개별연대채권자임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A가 C의 채무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C의 채무를 종료하는 경우 C에 대한 B의 청구는 A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감된다.⁵⁸⁾

한편 청산은 특별한 경우에 고려되는데, 곧 채무자와 개별연대채권자 일인 간에 후자의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청산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그 밖의 채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청산결과에 대한 사항이다. 청산이 모든 개별연대청구와 관련되는 경우 그 밖의 채권자의 청구에 관한 결과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청산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분담청구는 그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4) 제척기간의 종료

‘제척기간의 종료 또는 정지의 효과’(제11.1.7조)에 따라, 개별연대 채무자 일인에 대한 채권자 권리에 대한 제척기간의 종료는, 다른 개별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나, ‘분담청구의 정도’(제11.1.10조)에 의한 개별연대채권자 간의 상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다수 채권자의 권리로 제척기간 종료는 다른 개별연대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자의 의무 또는, ‘개별 및 연대채권자 간의 배분’(제11.2.4조)에 의거, 개별연대채권자 간의 상환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⁵⁹⁾ 예컨대 채무자 X에게 A, B, C의 개별연대채권자가 있다면, A의 X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X에 대한 B, C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B 또는 C가 X로부터 이행을 수령하였다면, A는 대금지급을 받은 공동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⁶⁰⁾

‘제척기간의 종료 또는 정지의 효과’에 의거, 개별연대채무자 일인에 대한 특단

57) *Ibid.*, pp. 396~397.

58) *Ibid.*, p. 397.

59) W. Posch, *Defens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2016, pp. 97~105.

60) UNIDROIT, *op. cit.*, p. 398.

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진행은 다른 개별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정지된다. 이와 유사하게 채권자 중 일인이 채무자에 대한 특단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진행은 다른 개별연대채권자들을 위하여 중지된다.

5) 판결의 효과

‘판결의 효과’(제11.1.8조)에 따라, 개별연대채무자 일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른 개별연대채무자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나, 개별연대채무자들 간의 상환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일한 시각에서 개별연대채권자들 중 일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법원이 내린 판결은, 채무자의 다른 개별연대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 또는 개별연대채권자들 간 상환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채무자 X는 A, B, C의 개별연대채권자가 있고, A는 단독 이행을 위하여 X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A의 청구권 일부를 인정하였다면, 판결은 B 또는 C에 대한 X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개별연대채권자들 간 특정상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⁶¹⁾ 본조에 의거, 다른 개별연대채무자들이 그러한 결정을 원용할 수 있지만, 관련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적 이유에 근거한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 여기서 ‘분담청구의 정도’(제11.1.10조)에 따른 개별연대채무자들 간 상환청구권은 특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동일한 시각에서 다른 개별연대채권자들은 그들 이해에 따라 법원판결을 인용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에 근거한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

4. 연대채권자 간의 배분

개별 및 연대채권자들은 상황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들 간에 동일한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채권자는 초과분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만큼 반환하여야 한다(제11.2.4조). 개별연대채권자들은 ‘개별 및 연대청구의 효과’(제11.2.2조)에 의거, 완전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들 간의 각각의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은 동등한 것으로 추정한다.⁶²⁾ 한편 대금을 청구한 공동채권자가 자신의 지분보다 많이 수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채권자가 개별 및 연대청구의 효

61) *Ibid.*, pp. 398~399.

62) H. D. Gabriel, “UNIDROIT Principles as a Source for Global Sales Law”, *Vill. L. Rev.* 58, 2013, p. 661.

과에 따라 완전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일인이 자신의 지분보다 많이 수령한 경우 그 채권자는 초과한 금액을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다른 채권자들의 과잉분에 관한 청구가 재산권인지 또는 단순히 자신의 지분보다 많이 수령한 채권자에 대한 개인적인 청구인지는 논외로 취급된다.⁶³⁾ 일례로 공동소유주 A, B는 1,000만원에 X에게 물품을 매도하였고 그들은 대금지급에 대한 개별연대채권자라고 할 때, X가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각각의 소유주는 500만원을 수령하여야 한다.⁶⁴⁾

VI. 요약 및 결론

본고는 PICC의 신설조문으로서 다수의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한 논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 채무자가 특정인으로서 채권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채무자가 전체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대하여, 달리 자기 지분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개별적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청구에 대항하여 개별 및 연대채무자는 자신에게 사적이거나 모든 공동채무자에게 공통적인 모든 항변과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공동채무자중 일인 이상에게 사적인 항변 또는 상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나 상계 또는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대항한 채권자의 상계는 그 이행 또는 상계의 정도만큼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밖의 채무자의 의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채무종료 또는 청산은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가 종료되거나 청산된 채무자의 지분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를 종료시키고, 나머지 채무자가 채무를 종료한 채무자의 지분만큼 채무가 종료되는 경우 그들은 채무가 종료된 채무자에 대항하여 분담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한다. 일인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권리의 제척기간 종료는 나머지 개별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또는 개별연대채무자 간의 상환청구권 등

63) I. Schwenzer, "Global Unification of Contract Law", *Uniform Law Review-Revue de droit uniforme* 21(1), 2016, pp. 60-74.

64) UNIDROIT, *op. cit.*, p. 399.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가 일인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제척기간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때, 제척기간의 진행은 나머지 개별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중지된다. 일인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명한 판결은 나머지 개별 및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개별 및 연대 채무자들 간의 상환청구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나머지 개별 및 연대채무자들은 그러한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채무자에 대해 사적인 근거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 개별 및 연대채무자들은 상황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지분으로 그들 간에 채무를 지며,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이행한 경우 각 채무자가 불이행한 지분의 정도만큼 나머지 채무자들 누구든지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분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개별 및 연대채무자는 나머지 그 밖의 채무자들로부터 초과분을 각 채무자가 불이행한 지분의 정도만큼 회수하기 위해 그들의 이행을 확보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완전이행을 받지 않은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에 대해 불이행된 부분만큼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며, 분담청구를 행사하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의무를 이행한 연대채무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개별 및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이용 가능한 여하한의 공동 항변 및 상계권을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사적인 항변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연대채무자의 일인 이상에게 사적인 항변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수의 채무자는 일인 채무자로부터 동일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때, 각각의 채권자는 자신의 지분만 청구할 때 그 청구는 각각 개별적이고, 각각의 채권자가 전체 이행을 청구할 때, 그 청구는 연대 및 개별적이며, 모든 채권자가 공동으로 이행을 청구할 때 그 청구는 공동이다. 다수의 개별 및 연대채무자 중 일인을 수익자로 의무의 완전한 이행은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 의무를 종료하며, 채무자는 여하한의 개별연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자와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항변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을 모든 공동 채권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수의 채권자에 관하여 이행 또는 상계의 효과, 채무종료 또는 청산의 효과, 제척기간의 종료 또는 정지의 효과, 판결의 효과 등은 다수의 채무자에 준하고, 개별 및 연대채권자들은 상황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들 간에 동일한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채권자는 초과분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만큼 반환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상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고찰”, 법조 제52권 제4호, 법조협회, 2003.
- 김상중, “채권관계 상대성 원칙과 제3자의 재산상 손해”, 재산법연구 제20권, 한국 재산법학회, 2003.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 노종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민사법학 제58권, 한국민사법학회, 2012.
- 안춘수, “계약적 채권관계상의 의무”, 고시계 제45권 제10호, 한국고시학회, 2000.
- 양창수, 민법 I : 계약법, 박영사, 2015.
- 이시환, “UNIDROIT Principles 2010에 관한 소고”,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 상무학회, 2011.
- 임형택, “약정채권관계에서의 급부의무와 보호의무”, 재산법연구 제26권, 한국재산 법학회, 2009.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4.
- Berger, K. P., “The Ro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ntract Practice: The UNIDROIT Model Clauses”, *Uniform Law Review-Revue de droit uniforme*, vol. 28, 2014.
- Bernardini, P., “Unidroit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Uniform Law Review-Revue de droit uniforme*, vol. 19, no. 4, 2014.
- Bonell, M. J., “International Investment Contracts and General Contract Law: A Place fo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 L. Rev.*, vol. 17, 2012.
- _____,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Caselaw and Bibliograph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6.
- _____, “UNIDROIT Principles and Transnational Law”, *Unif. L. Rev. ns*, vol. 5, 2000.
- Cercel, S., Scurtu, 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olutions of the Romanian Civil Code and the UNIDROIT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Revista de Stiinte Politice*, vol. 50, 2016.

- Clive, E., *eds.*,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Edinburgh Law Review*, vol. 20, no.2, 2016.
- Faria, J. A. E., “The Influen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n National Laws”, *Uniform Law Review*, vol. 13, 2016.
- Fontaine, M., “New Provisions on Plurality of Obligors and of Obligees in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Unif. L. Rev.*, vol. 16, 2011.
- Gabriel, H. D., “UNIDROIT Principles as a Source for Global Sales Law”, *Vill. L. Rev.*, vol. 58, 2013.
- _____, “Use of UNIDROIT Principles as Neutral Law in Arbitration”, *J. Arb. Stud.*, vol. 23, 2013.
- Heutger, V.,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Towards a Globa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vol. 20, no. 3, 2012.
- Michaels, R., “The UNIDROIT Principles as Global Background Law”, *Uniform Law Review-Revue de droit uniforme*, vol. 19, no. 4, 2014.
- Posch, W., *Defens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2016.
- Reinisch, A. “The Relevan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Uniform Law Rev.*, vol. 19, 2014.
- Rosenberg, A. S., *eds.*,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Franchising and Distribution”, *The International Lawyer*, 2012.
- Schwenzer, I.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Victoria U. Wellington L. Rev.*, vol. 39, 2008.
- Sarah, L. A. & Agro, E. F., “The New Provisions on Plurality of Obligors and of Obligees in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Unif. L. Rev.*, vol. 20, 2011.
- Uchida, T., “Contract Law Reform in Japa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Unif. L. Rev.*, vol. 16, 2011.
-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 Vogenauer, S.,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t Twenty: Experiences to Date, the 2010 Edition, and Future Prospects”, *Uniform Law Review*, vol. 19, no .4, 2014.
- [www.unidroit.org/instruments/commercial-contracts/unidroit-principles-2010\(2010.11.25\).](http://www.unidroit.org/instruments/commercial-contracts/unidroit-principles-2010(2010.11.25))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Bases for Plurality of Obligors and Obligees under PICC

Chong-Seok SHIM

This study focused on getting clear understanding on the legal bases in terms of plurality of obligors and plurality of obligees through a analysis the PICC(2010) which has been standing firmly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Related to the title of this paper, PICC are dealing with not only plurality of obligors but plurality of obligees. The contents of the former are as follows; presumption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and obligee's rights against joint and several obligors (arts.11.1.1, 11.1.2, 11.1.3), availability of defences and rights of set-off and effect of performance and set-off (arts.11.1.4, 11.1.5), effect of release or settlement and effect of expiration or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 (arts.11.1.6, 11.1.7), effect of judgment (art.11.1.8), apportionment among joint and several obligors and extent of contributory claim (arts.11.1.9, 11.1.10), rights of the obligee, defences in contributory claims, inability to recover (arts.11.1.11, 11.1.12, 11.1.13)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s of the latter are as follows; definitions (art.11.2.1), effects of joint and several claims (art.11.1.2), availability of defences against joint and several obligees (art.11.2.3), allocation between joint and several obligees (art.11.1.4). The main subjects are one is when several obligors are bound by the same obligation towards an obligee, the obligations are joint and several when each obligor is bound for the whole obligation, the obligations are separate when each obligor is bound only for its share and the other is when several obligees can claim performance of the same obligation from an obligor, the claims are separate when each obligee can only claim its share, the claims are joint and several when each obligee can claim the whole performance and the claims are joint when all obligees have to claim performance together.

Keywords : Plurality of Obligors, Plurality of Obligees, Joint and Several Obligors, Joint and Several Obligees, Apportionment